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자 교육감 규정 A-101를 대체합니다.

변경내용:

- 학생이 학교 등록시 나이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항목 추가(p. 2, § I.A.8).
- 학교에 합법하게 등록된 학생이나, 학생등록담당실, D75 프로그램 또는 특수교육 위원회에 의해 학교배정/등록된 학생은 그 누구도 배정/등록된 학교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함(p. 2, § I.A.9).
- 학교나 패밀리 웰컴센터에서 학교 등록을 요청한 학령기 아동의 학교배정은 가능한 한 익일(수업일)에 이뤄져야 하나, 최대 5 수업일을 넘기지 말아야 함을 명확히 함.
- 해당 존의 뉴욕시 교육청 운영 Pre-K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으로서 지원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예비등록되어 있거나 재학 중이며 다음 9월에 K-5학년이 될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은 해당 학교 입학에 우선권이 있으며, 존(zone) 재정비 계획으로 인하여 지원자의 존이 지원시기 중에 변경될 경우 이 학생은 본래 존 스쿨에 다닐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음을 설명(p. 4, § II.B.2.a).
- 비 존(non-zoned) 학군 학교에서의 뉴욕시 교육청 운영 Pre-K 프로그램 입학 우선권을 설명(p. 5, § II.B.3).
- 존 스쿨이 없는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은 학생의 주소지에서 전통적으로 배정해 오던 초등 및 중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함 (p. 6, § II.D.1.b).
- 초등 및 중학교 입학 정책을 명확히 함: 지원 또는 선택 절차에 의해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배정 예외 요청 (Placement Exception Request: PER)이 허용되었거나, 본인의 존이 아닌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해당 학교의 최종 학년을 마칠 때까지 출석한 학생은, 그가 초등학교를 다닌 학군의 존 초등학교에 일반적으로 입학이 허용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입학 허가를 요청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p. 8, § II.F.1).
- 이중언어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특수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어 해야하는 전학에 관한 승인이나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IEP에 명시된 특수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불가하여 특수교육 담당실에서 승인한 전학, 그리고 공정 공청회 명령에 의한 전학은 각기 해당 담당실에서 승인하고 학생 등록 담당실로 이관하여 학교배정을 받아야 함을 설명; (p. 10, § IV.A).
-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학생 등록 정책 갱신. 여기에는 프로그램 변경이나 특수 프로그램 추천 등과 같은 상황이 포함 (p. 12, § V.A).
- 학생을 학교에 등록시키려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거주 증명 서류 항목 추가 및 홈리스 학생에 대한 거주 증명 서류 제출 예외조항 추가 (pp.13, 14, § VII.A).
- 홈리스나 보호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장치 추가: 홈리스 또는 보호자 없는 학생이 새로운 거주지에 의거하여 새로운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학교 등록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구비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다 해도 즉시 홈리스 또는 보호자 없는 학생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또한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 중인 홈리스 학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입학 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p. 16, § VIII, D, 2, 7).

- 75학군에서는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특수교육 위원회 (CSE) 재평가가 끝나고 IEP에 학군 내 공립학교가 추천된 경우에만 고등학생을 비75학군 일반 고등학교로 리스트 노티스 할 것임을 명확히 함. (p. 18, § IX.D).
- 교육청의 신규 조직도(전체)를 반영한 교육청 각 담당부서명 및 담당자 성명 갱신.

개요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자 교육감 규정 A-101를 대체합니다. 이 규정은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에서의 학생 입학, 제적 및 전학에 관련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 서문

학생 등록 담당실은 75학군 및 79학군 소속의 학교들을 제외한 모든 학교들에 대한 등록 정책과 등록 계획에 대한 유일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학군의 교육장은 등록 운영과 해당 학군에서의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 입학 전형-일반적인 정책 및 절차

1. 학생의 인종, 피부색,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임신, 이민/시민권 상태, 장애, 성적지향, 종교 또는 민족에 따라 공립학교 입학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1]

2. 입학하는 역년도에 네 번째 생일을 맞게되는 어린이는 반드시 유아원으로 입학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프로그램에 한하며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함).

3. 입학전형이 실시되는 역년도에 다섯번째 생일을 맞게되는 어린이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지 또는 다른 학교로부터 전입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이 유치원 입학 요건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유치원으로 입학하여야 합니다:

   a. 어린이의 부모가 다음 학년도에 1학년으로 등록하는 것을 선택하였거나, 또는

   b. 비공립 학교에 등록하였거나 홈스쿨링을 선택한 경우.

4. 입학하는 해에 6세 생일을 맞는 아동은 6항(아래)에 따라 반드시 1학년에 입학해야 합니다.

5. 어린이들은 상기 3a 또는 3b의 경우를 제외하고 5세부터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학교 출석은 어린이가 17세가 되는 학년도의 마지막까지 필수적이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이들 학생은 21세가 되는 학년도 말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6. 학생이 연령에 따라 1학년에 입학해야 하지만 학교장이 다른 학년 배정이 학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배정에 대해 교육장과 상담하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의료 또는 기타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예외적인 배정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해당 학생에게 적절한 학년 레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7. 뉴욕시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욕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요 거주지가 뉴욕시가 아닌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학생 등록 담당실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 규정 A-125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이 고려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에 등록하는 시점에 거주지 질문서(Residency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구분된 모든 학생은 반드시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프로그램에 추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청소년 대상 맥키니-벤토 법 안내서(첨부 번호 7)와 함께 제공되는 거주지 질문서(첨부 번호 6)를 참고하십시오.

[1] 인종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학교 등록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별은 한 종류의 성별을 가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에 지원할 때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8. 학생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부모와[2] 학생이 함께 방문하여,[3]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섹션 VII 참조);
- 출생증명서, 여권(외국 여권 포함), 세례증명서(생년월일이 적힌 것) 등의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과 서류 또는 기록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운전면허증;

  b. 주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IDNYC 카드 포함);

  c. 생년월일이 적혀 있고 사진이 부착된 학교 신분증;

  d. 영사관 발급 신분증;

  e. 병원 또는 의료기록;

  f. 군인 피부양자 신분증;

  g.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예, 지방 사회 서비스 기관, 연방 난민 정착 지원국);

  h. 법원 명령 또는 기타 법원에서 발급한 서류;

  i.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등록증; 또는

  j. 비영리 국제 원조 기관 또는 봉사단체 기록.

-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 (있는 경우);
- 아동의 최근 성적표/성적 증명서(가능한 경우);
- 아동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및/또는 504 조정 계획. 해당 되고 있는 경우.

만약 학생이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 해당 학생을 임시로 등록시키고 학교에서는 교육감 규정 A-701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출생 증명서, 여권, 세례기록 또는 기타 적절한 학생의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학생을 임시로 등록시키고 학교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학년 배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 학교에 적절하게 등록하였거나 학생 등록 담당실, D75 프로그램 또는 해당되는 경우 유아원 특수교육 위원회에서 등록 또는 배정 받은 어떤 학생도 학생이 배정/등록된 학교에서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10. 학생이 등록 자격을 갖춘(예. 주소지, 형제자매 우선 순위, 특수 프로그램 추천 내용 등) 초등학교에 등록을 위해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

[2]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의 의미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독립한 미성년자이거나 18세 이상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

[3] 섹션 VIII에 안내된 바와 같이, 만약 학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학생이 등록 담당실이나 학교에 와서 본인이 홈리스임을 밝히고 등록이나 전학을 원한다고 한다면, 등록/전학을 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참석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독립한 학생은 또한 등록할때 학부모의 참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해 반드시 입학허가 시점에 등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자격 상태가 변하였다면 학생 등록 담당실은 학생을 전학시킬 것이며 해당 학생이 자격을 갖춘 적절한 학교에 등록시킬 것입니다.

11. 다른 학군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처음으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의 2-8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등록 시점에 제출한 학생의 최종 재학 학교의 교육 기록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교육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 새로 뉴욕시 공립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교육 기록이 없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a. 2-8학년에 본 규정에 따라 배정을 받았으나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다른 학년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추천한 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교육장은 해당 학생에게 적절한 학년 레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b. 고등학교 연령의 학생들의 경우 교육 관련 기록이 없으며 입학하는 학교 역년도에 (또는 6월 30일 당일 또는 이전) 15세가 되는 학생은 9학년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이런 학생이 고등학교에 배정된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장의 대리인은 적절한 교육 기록의 접수에 따라 학교에서 적절한 학년 배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13. 학생이 뉴욕시 공립 학교로부터 떠났다가 동일한 학년도 (6월 30일 당일 또는 전) 내에 돌아왔다면, 해당 학생은 학생의 전에 뉴욕시 학교에 배정받았던 학년 및 등록 시점에 제시된 학생의 마지막 재학 학교로부터의 교육 기록을 고려한 것에 기반하여 배정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기록을 제시할 수 없다면, 해당 학생은 그 학년도에 학교를 떠났을 때 본인의 학년도 레벨과 동일한 학년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학생이 뉴욕시 공립 학교로부터 떠났다가 그 후의 학년도에 뉴욕시 공립 학교로 돌아왔다면, 해당 학생은 (상기) 12항에 안내된 바와 같이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에 학생이 처음으로 등록했던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 학교나 패밀리 웰컴센터에서 학교 등록을 요청한 학령기 아동의 학교배정은 가능한 한 익일(수업일)에 이뤄져야 하나, 최대 5 수업일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15. 법에 따라, 학생에게 체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출하도록 할 수 없으며, 또한 체류 신분이나 체류 신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체류 신분에 대한 내용은 [4]어떤 학교 양식 및/또는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6. 사회보장 기관의 보호하에 있거나, 청소년 감호 기관 및 교정 기관의 보호하에 있는 학생들은 기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교에 등록될 것입니다.

17. 유치원에서 12학년에 재학중이며 뉴욕시 내에서 거주지가 변경된 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최종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450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 외에 징벌이나 학업 문제로 인해 존 학교나 거주하고 있는 학군으로 전학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18. 상기 섹션 I. A.17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새로운 주소에 따라 현재 학교에 등록할 자격을 잃게 되는 주소의 변동이 발생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의 출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 학생은 노란색 스쿨 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출석률이 나빠지고 지각이 잦아진다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생 및 학생 가족과 함께, 정기적인 출석률을 높이고 지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결석이 빈번하고 지각이 계속되며 전학이 학생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새로운 주소에 따라 해당 학생이 전학할 자격이 있는 적절한 학교로 전학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보로 현장 지원 센터 담당자 담당자에게 정기적인 출석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과 학생 가족과 함께 기울인 노력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학생의 잦은 결석 및/지각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로 현장 지원 센터 담당자는 학생의 거주지가 변경되기 전 및 후의 출석과 지각 기록을 비교한 기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의 출석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 것입니다. 보로 현장 지원 센터 담당자가 출석과 정시 등교 비율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하면, 담당자는 전학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할 보로 등록 수석 디렉터 또는 디렉터 대리인에게 관련 정보를 알릴 것입니다. 만약 요청이 승인된다면 학교장은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었음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은 학생의 전학을 실시하고 학생을 존 또는 배정된 학교나 기타 학생이 전학할 자격을 갖춘 적절한 학교에 배정할 것입니다.

    노숙 학생들 또는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출석률이 낮은 학생의 전학은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 법 (42 USC 11431)의 타이틀 VII 및 교육감 규정 A-780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II. <u>입학 절차</u>

A. 형제자매 우선권[5]

1. 배정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제자매는 신청하려는 학생의 같은 가구에서 거주하는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이복 남자형제, 이복 여자형제, 의붓 남자형제, 의붓 여자형제, 수양 남자형제, 수양 여자형제 포함)로 정의합니다.

2. 학교에서는 배정을 하기 전에 형제자매 상황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할 시점에 초등학교에 이미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한 학생의 형제자매는, 정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형제자매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4. 유치원-5학년, 유치원-6학년 또는 유치원-8학년 교육 초등학교에서, 신청 학생은 형제자매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한 경우 및 9월에 학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해당 학교에 5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에 재학하게 될 때만 형제자매 우선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B. 유니버설 유아원 프로그램 입학

[5] 형제자매 우선 순위는 초등학교 레벨에서만 적용될 것입니다.

1. 유니버셜 유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만 4 세가 되어야 합니다.

2. 학생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자신의 학군 내 뉴욕시 교육청 유아원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a. 입학원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예비등록되었고 9월에 K-5학년에 재학할 형제자매가 있는 존 학생. 일부 경우, 존 재정비 계획의 승인 시점에 따라 학생의 학교존이 입학지원 기간동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본래의 존 학교에 입학우선권이 있습니다.

   b. 상기 (a)에 해당하지 않으나 존 학교에 지원한 존 학생;

   c. 형제자매가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하였으며 다음 9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해당 학군에 거주하며 존 학교가 없거나 존 학교에 유아원 프로그램이 없는 학생;

   d. 형제자매가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하였으며 다음 9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해당 학군에 거주하며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존 학교가 있는 학생;

   e. 9월 학기가 시작될 때 유치원-5학년에 등록될 형제자매가 있음이 입증된 보로에 거주하는 학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f. 9월 학기가 시작될 때 유치원-5학년에 등록될 형제자매가 있음이 입증된 보로 외에 거주하는 학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g. 존 학교가 없거나 존 학교에 유아원 프로그램이 없는 해당 학군 내 거주 아동;

   h. 본인의 존 학교가 아닌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군 내 거주 학생;

   i. 거주 보로 내 타학군에서 지원하는 학생;

   j. 타학군, 타 보로에서 지원하는 학생.

3. 학생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뉴욕시 교육청의 비 존(non-znoed) 유아원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a. 입학원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예비등록되었고 9월에 K-5학년에 재학할 형제자매가 있으며 해당 학군 거주자로서 존 학교가 없거나 존학교에 유아원 프로그램이 없는 학생;

   b. 입학원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예비등록되었고 9월에 K-5학년에 재학할 형제자매가 있으며 해당 학군 거주자로서 유아원 프로그램이 있는 자신의 존 스쿨을 놔두고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c. 9월 학기가 시작될 때 유치원-5학년에 등록될 형제자매가 있음이 입증된 보로 내 거주자로서 학군 외 지역 거주 학생;

   d. 9월 학기가 시작될 때 유치원-5학년에 등록될 형제자매가 있음이 입증된 보로 외 거주자루서 학군 외 지역 거주 학생;

e. 존 학교가 없거나 존 학교에 유아원 프로그램이 없는 해당 학군 내 거주 아동;

f. 본인의 존 학교가 아닌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군 내 거주 학생;

g. 거주 보로 내 타학군에서 지원하는 학생;

h. 타학군, 타 보로에서 지원하는 학생.

C. 유치원 입학[6]

1. 존 학교들은 공간이 허락하는 한, 등록을 위해 학교에 방문한 시기에 관계 없이 학교가 소속된 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존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a. 형제자매가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하였으며 다음 학년도 9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학년으로 등록할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된 존 학생;

b. 상기 (a)에 해당하지 않으나 존 학교에 지원한 존 학생;

공간이 충분하며 학군의 필요에 따라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아래 요약된 순서데로 다음 우선 그룹에 따라 배정이 제의될 수 있습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만이 이 우선 순위 밖에서 비-존 학생의 배정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의 존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나 이원언어 프로그램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c.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다음 해 9월 학년도가 시작될 때 유치원-5학년에 형제자매가 예비 등록하였거나 등록한 것이 증명된 해당 학교의 존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d.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다음 해 9월 학년도가 시작될 때 유치원-5학년에 형제자매가 예비 등록하였거나 등록한 것이 증명된 다른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e.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교의 유치원-5학년에 재학할 형제자매가 없으며 학교 존이 아닌 곳에 거주하지만 학교의 학군 내에 거주하는 학교의 유아원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학생;

f.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교의 유치원-5학년에 재학할 형제자매가 없으며 본인의 학교 존 및 학군이 아닌 학교의 유아원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학생;

g. 상기 (c) 및 (e) 조항 외,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h. 상기 (d) 및 (f) 조항 외, 다른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2. 지원서는 반드시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비-존 학교 입학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a. 형제자매가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하였으며 다음 9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된 학군 내 거주 학생;

[6] 섹션 II.C.1 및 II.C.2는 존이 아닌 학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형제자매가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하였으며 다음 9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된 학군 외 거주 학생;

c.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교의 유치원-5학년에 재학할 형제자매가 없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학군 내 학교의 유아원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학생;

d.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교의 유치원-5학년에 재학할 형제자매가 없으며 본인의 학군이 아닌 학교의 유아원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학생;

e. 상기 (a) 및 (c) 조항 외, 학군 내 거주 학생;

f. 상기 (b) 및 (d)에 조항 외, 학군 외 거주 학생.

D. 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7] 입학[8]

1. 지원자격

a. 정원에 따라 존 학생들은 본인의 존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b. 존 학교가 없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은 과거에 학생의 주소지에 거주한 학생들이 배정 받았던 학군 내 초등 또는 중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c. 일부의 경우, 조닝 재조정 계획의 승인 일정에 따라, 학생의 존 학교가 신청 기간 동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이 입학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는 존이 이 학생의 학교 존이 됩니다.

d. CEC가 채택한 존 재조정의 영향을 받는 존학교에 등록된 형제자매를 가진 아동은 승인된 존 계획에 형제자매 우선권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존에 의한 형제자매 우선권이 있습니다.

2. 중학교 우선권-중학교 선택

a. 존 중학교가 있는 학생들은 본인의 중학교 선택 신청서에 해당 학교를 기재하면, 해당 학교 입학 우선권이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신청 기간 동안 존 학교들의 제공가능한 정원 (OSE가 결정)은 신청 절차 기간에 모든 존 학생들의 입학이 결정된 후에 비-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존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존 학생들은 더 이상 해당 학교 입학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지원한 존 학생들은 이의제기를 한 비-존 학생들의 배정을 하기 전에 정원이 남아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b. 유치원-8학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5학년 학생들은 만약 재학중인 유치원-8학년을 교육하는 학교를 본인의 중학교 선택 신청서에 계속 다닐 학교로 선택한다면 해당 학교의 입학 우선권이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신청 기간 동안 K-8 학교들의 제공가능한 정원 (OSE가 결정)은 해당 학교에 지원한 모든 본교출신 학생들로 우선 채워진 후 본교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중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더 이상 해당 학교 6학년 배정 우선권이 없습니다. 동일한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이의제기를 한 다른 학교 학생들의 배정을 하기 전에

[7] 추가적인 상기 조항에 따라, 본 규정의 조항들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적용됩니다.

[8] 섹션 II. C의 정책은 상기 섹션 II.A.2에 정해진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유아원에 대한 입학 전형을 제외한 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한 입학 전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남아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c. 학생들이 중학교 선택 절차의 일부로 비-존 또는 비 재학 학교에 배정을 받았을 때,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본인의 존 또는 유치원-8학년 교육 학교에 돌아갈 자격이 더 이상 없습니다. 존 또는 유치원-8학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대한 모든 요청은 PER 또는 전학 절차를 통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3. 등록/배정

a. 유치원 입학전형 후에 이사온 존 학생들은 정원 여부에 따라 직접 본인의 존 초등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 과정 종료 후 존 학교가 없는 곳으로 이사 온 학생들은 패밀리 웰컴센터를 방문하여 학교를 배정받도록 합니다.

b. 입학전형 기간 후에 이사 온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전학하려는 존 중학교 학생은 본인의 존 중학교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6학년 신청 절차 기간에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존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전형을 통해 중학교에 배정될 것입니다. 입학전형 과정 종료 후 존 학교가 없는 곳으로 이사 온 학생들은 패밀리 웰컴센터를 방문하여 학교를 배정받도록 합니다.

c. 시작하는 학년이면서 입학전형에 참여하지 않고 비- 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또는 본인의 존이 아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 허가를 바라고 있는 학생들은 본 규정서에 정해진 정책이나 학생 등록 담당실의 결정에 따라서만 배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E. 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관한 규정

1.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유치원이 첫 공립 교육입니다. 해당 학년도에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5살이 되어야 합니다.

2.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본 규정서에 요약된 바와 같은 정책에 따라 이들 학교에 등록 우선권을 갖게 되며 반드시 비-존 학생들에게 배정을 하기 전에 입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존 학교들은 존 학생들을 등록시켜야 하며 반드시 본 규정서에 정의된 정책 및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정원에 따라 존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4. 비-존 학생들은 본 규정서에 정해진 정책 및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만 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5. 존 학교는 본 규정서에 요약된 정책에 따라 해당 입학허용 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존 학교는 어떤 학년의 학급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존 학교 학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등록 담당실 또는 학군 계획 담당실에서만 어느 특정 학년에 더 이상 학생을 받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학생의 학년에 학생수가 너무 많아 학생들을 부득이 존 학교가 아닌 학교에 등록시켜야 할 경우, 학생은 거주하는 학군 내에서 대안적인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배정 자격은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기타 비-존 신청자들보다 더 높은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과밀 학급 문제에 따라 다른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배정을 수용하거나 또는 존 학교에서 기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7. 승인된 제한 계획에 따라 본인의 존 학교가 아닌 학교로 배정 받은 학생들은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정한 마감일까지 존 학교의 대기자 명단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이 재배정된 경우, 다음 해 1학년에 정원이 남게 된다면 대기자 순서에 따라 재배정되었던 유치원 학생들에게 입학이 제의될 것입니다. 재배정받은 학생들은 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배정받았던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런 학생들은 거주지에 따른 존 학교로의 자동 전학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재배정 학교 통학을 위한 교통편 수혜자격을 갖고 있던 해당 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수혜자격이 있거나 학생 교통 담당실의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교통편을 제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마침에 따라 이런 학생들은 등록했던 초등학교나 거주지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할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8. 학생의 존 초등학교의 전학에 대한 학부모 요청은 정원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9. 존 학교의 기본적인 의무는 해당 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존 학교에서 모든 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면, 학교의 비-의무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F. 입학 허가 정책

1. "선택" 프로그램을 통한 입학 허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만 해당)

지원 또는 선택 절차에 의해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배정 예외 요청 (Placement Exception Request: PER)이 허용되었거나, 섹션 VI에 의거하여 본인의 존이 아닌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해당 학교의 최종 학년을 마칠 때까지 출석한 학생은, 그가 초등학교를 다닌 학군의 존 초등학교에 일반적으로 입학이 허용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입학 허가를 요청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선택을 실시하는 학군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또한 본인의 존 중학교를 포함한 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학군의 중학교에 진학하기를 선택한 학군 외 초등학교 학생은 학군 내 거주하는 신청자들과 동일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학군에서 권리가 있는 학생이 본인이 선택한 학교에 매치되지 않았다면, 이런 학생은 거주하는 학군에 배정 우선권이 있습니다.

2. 유치원-8학년 또는 6-12학년으로 구성된 학교의 입학

유치원-8학년 또는 6-12학년으로 구성된 학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입학 시점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유치원-8학년 또는 6-12학년으로 구성된 학교에 입학 할 때, 학생은 고학년의 입학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동시에 자격을 갖춘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미 출석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원-8학년 교육 학교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G. 고등학교 입학

1. 고등학교 입학 절차에 따라 지원할 경우 8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지원 학년도에 고등학교 안내서에 명시된 대로 존학교에 우선권을 받거나 입학이 보장됩니다.

2. 어떤 고등학교도 (75 학군 학교, 79 학군 프로그램 및 거치 학교 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만 고등학교 학생들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3.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을 떠났었으며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의 결과로 한 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거치학교 및 신규 이민과 영어 구사가 제한적인 학생을 위한 학교 포함)에 매치되었던 학생들은 본인이 매치되었던 학년도 동안 언제든지 매치되었었던 학교에 돌아와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II. 재입학

A. 재입학/복학 권리

일반적으로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학생은 뉴욕시 공립학교로부터 퇴학된 1년 내 이전에 다니던 학교로 재입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a.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이전에 거주하던 주소지로 다시 돌아온 경우, 정원에 따라 본인의 존 학교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b. 이전에 비-존 학교에 다니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은 만약 거주지에 따른 등록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1년 내 해당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c. 이전에 뉴욕시 또는 학군 영재 프로그램에서 학습했던 학생들은 정원이 남아 있으며 동일한 학군 (학군 프로그램의 경우)에 거주하게 되었다면 영재 프로그램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d. 학군 영재 프로그램에 등록했었으며 다른 학군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정원이 남아 있다면 새로 거주하게 된 학군의 영재 프로그램에 재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2. 고등학교 학생

   a.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에서 떠났던 고등학교 학생은, 학생이 최소 1일 이상 등교하였었다면, 학교를 떠난 날 부터 해당 학년도를 마칠 때까지 본인이 이전에 다녔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거치 학교 및 신규 이민 및 영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을 위한 학교 포함)에 다시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9]

   b. 학생의 재입학 권리에 관한 의문이 있다면 학교 등록 담당실에서 재입학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IV. 전학

학교는 전학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학생 가족들과 면담을 하여야 하며 전학이 허가되면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A. 모든 배정 예외 요청뿐만 아니라 모든 전학 요청은 [10]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1. 교육감 규정 A-450 및 A-443에 따른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가 관리하는 정학에 따른 비자발적인 전학과 자발적인 전학;

2. 초등학교 학생이 존 학교에 등록하고자 하였으며 학교장이 학생의 전입을 허용한 경우 (정원이 남아 있을 때)의 전학

3. IEP에서 새로운 이중언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특수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9]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던 학생은 학생이 21세가 되는 해 마지막 학년도까지 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10] 배정 제외 요청은 학생의 존 또는 어려움에 따른 학교 배정 외, 가을학기에 학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학;

4. 학생의 IEP에 추천된 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통합 협력수업 및 특수 학급)을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음이 서류로 입증되어 특수교육 담당실에서 승인한 전학;

5. 공정 공청회 명령에 의한 전학, 그리고

6. 75 학군 및 79 학군 내 전학

B.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전학이 허용된 경우. 모든 경우에 학생 등록 담당실은 전학 요청을 거부 또는 승인하고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결정할 것입니다.

1. <u>보육 문제에 따른 전학</u> (K-5 학년만 해당): 직장 및/또는 보육 기관의 위치에서 부터 학교까지의 거리에 따른 보육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따라 학부모는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고용주 및 보육 제공처로부터 보육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u>형제자매 전학</u> (유치원-5학년 만 해당): 자녀가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는 형제자매 전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u>의료문제에 따른 전학:</u> 학부모는 전학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절박한 의료 문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의료문제에 따른 전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건강상의 문제점 및 전학이 추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의 레터헤드에 의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교육청 담당자가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의료 기관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4. <u>안전문제에 따른 전학:</u>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에 대한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49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a) 낙오아동방지법안(No Child Left Behind: NCLB)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b) 해당 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학생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괴롭힘, 협박 및 왕따 포함). 낙오아동방지법안 (NCLB) 요청은 정학담당 보로 디렉터가 조정할 것입니다.

   비-NCLB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고려하며,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학교장/담당자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보로 등록 수석 디렉터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요청 및 관련 요청에 대한 문서는 반드시 학교로부터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패밀리 웰컴 센터에 관련 문서들을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이 고려되려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 학교 사건 보고서 또는 기타 학교 문서;

      - 경찰 조사서, 접수 번호 또는 법원의 관련 문서;

      -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조사 요약서; 및

      -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접수 양식.

b. 만약 제출된 서류들이 안전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딘, 안전담당 교감 또는 학교장은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학생 등록 담당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 만약 학생의 전학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정된다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 없이),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이 승인될 것이며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새로 배정될 학교를 결장할 것입니다.

5. <u>운동을 위한 전학 (</u>고등학생 만 해당)

a.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이유로 전학이 허가되진 않습니다;

b. 다만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적인 공립학교운동리그(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으며 단계적 폐교 조치가 내려져 학교 건물에서 특정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운동선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적인 (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학생 운동 선수로 팀이 해체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또한 기타 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정원이 남아 있으며 해당 운동 종목의 PSAL 팀을 운영하며 학생 운동 선수의 학업적 체육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학교를 배정할 것입니다.

c.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적인 (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학생 운동 선수로 낙오아동방지법안 (NCLB)에 따른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본인의 NCLB 신청서에 있는 학교로만 전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d. 상기 b 및 c에 요약된 바와 같은 경우, 학생 운동 선수는 새로운 학교에서 공식 PSAL 팀의 참가 자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반드시 팀에 참가하기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 고등학교 운동선수에 관한 모든 규정은 PSAL 학생 운동 선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참고 웹사이트: www.psal.org).

6. <u>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u> (고등학생만 해당)

a. 가정에서는 반드시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 요청을 위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통학시간이 90분이 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예 3번 이상 교통편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에만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이 고려될 것입니다.

7. <u>존 고등학교로 전학</u> (고등학생만 해당)

a. 처음 9학년에 진급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통해 배정받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첫 학년을 마치도록 기대되며 가장 빠른 전학은 다음 학년도에 자신의 존 학교 (해당되는 경우)로 전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B.1–B.4 및 B.6.에 명시된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더 빨리 존학교로 전학할 수도 있습니다.

b. 처음 9학년에 진급한 학생을 제외하고 존 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언제든 존 고등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1–B.4 및 B.6.에 명시된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보다 우선시됩니다. 모든 전학 요청은 남아있는 정원에 따라 결정되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때 까지 보류됩니다.

C. 배정 예외 요청 (초등학교 및 중학교만 해당)

1.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은 본인의 존이 아닌 학교로 배정된 경우, "배정 예외 요청서 (P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예외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관련된 문제가 제시될 때 고려되며 반드시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가 예상했던 등록수에 미치지 못하여 정원이 남아있을 때만 특정 학교로의 입학이 허가될 것입니다.

V. <u>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 대상 등록 정책</u>

A. 일반교육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정책은 또한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포함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장애 학생의 전학 및 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상의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장애학생들은 이것이 D75학교나 비공립학교로의 배정이 아닌 이상, 현재 학교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특수 프로그램

a. 아동의 IEP가 이중언어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 학생은 뉴욕시 교육청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찾아 신규배정을 승인할 수 있을 경우, 이렇게 하기 전까지 현재 학교에 남아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학생은 전학하게 될 것입니다.

b. 만약 최종 학년까지 어느 시점에라도, 학생의 IEP에 특수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기재되었더라도, 이 학생은 최종학년까지 현재 학교에 남아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 및 중학교 학생은 전학갈 학교에 자리가 나는 경우, 자신의 존 학교로 전학갈 권리가 있습니다.

B. 전에 장애 학생으로 판정받았었으며 IEP 없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적용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이전 뉴욕시 IEP에 따라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하다면 30일 이내에 학생의 학교에서 IEP 회의를 열어 새로운 IEP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C. 만약 학생이 뉴욕시가 아닌 곳에서 발행된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였다면, 학생은 반드시 동류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적절한 학교 배정을 할 적절한 CSE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에 의뢰되어야 합니다.

VI. <u>거주지 결정</u>

A. 학생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거주지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갖고 있는 정해진 학교 학군의 지리적 경계선 내에서 생활을 위해 물리적으로 머물곳으로 정의됩니다.

2. 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한 학생의 거주지는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 돌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에 따라 결정됩니다.

B. 다음의 내용은 학생의 친부모나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1.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 등록할 때 부모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동반하여야 합니다 (섹션 VIII. D 및 교육감 규정 A-780에 설명된 바와 같은 독립한 청소년의 경우 제외). 부모의 관계를 맺고있는 사람에는 친부모나 입양을 통한 학생의 부모, 수양 부모,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포함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개인에 대한 책임과 보호를 맡았다면 이 사람은 다른 개인의 후견인으로써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후견권의 증명이 학생 등록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2. 만약 학생을 등록하려는 개인이 학생의 친부모나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이 아니라면, 해당 개인은 반드시 학교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에 성명, 집주소, 전화번호, 친부모 또는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의 성명, 학생이 본인과 함께 거주하게 된 이유 및 학생이 함께한 기간 등 (첨부 번호 1 또는 2 참조)을 설명한 공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은 이 공증받은 공술서 (섹션 VIII.D 참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학생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의문점이 있다면, 학교는 학생과 보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더욱 상세한 조사를 위해 학생의 등록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C.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학생이 친부모나 법적인 후견인이 아닌 개인과 거주함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

1. 학생이 해당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것 같습니까?

2. 친부모나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이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타인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 및/또는 관리 권한을 양도하였습니까?

3. 친부모나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이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4.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5.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에게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관리권한을 넘겨주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친부모나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으로부터 맹세 및 공증 받은 증명서 또는 자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번호 1 또는 2 참조).

6. 학생이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이 타인과 거주하는 이유가 오직 학생이 특정 학교에 입학하거나 학생의 현재 학교에서 입학자격이 없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면 학생의 주거지가 제시한 주소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VII. <u>주거지 증빙</u>

A. 주거지 증빙은 반드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할 때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래 제 2 문단에 설명된 예를 제외하고는 다음 거주지 증명 서류 중 두 가지를 제출하면 되며, 각 서류에는 집 주소가 반드시 적혀있어야 합니다

1. 주소지 증명을 위해서는 다음 중 두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의 임대 계약서, 집문서, 또는 모기지 고지서.

b. 유틸리티 회사 (예, National Grid, Con Edison, 또는 Long Island Power Authority)에서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이 적힌 주거용 공과금 고지서(가스 또는 전기); 반드시 발급한 지 60일 이내의 것.

c. 발급된지 60일 이내의 주거용 케이블 TV 고지서 (학부모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것).

d. 제출일 기준 60일 내에 국세청(IRS), 뉴욕시 주택청, 연방 난민 지원실, 인적 자원국(HRA), 아동 복지국(ACS) 또는 아동 복지국 계약처 등을 포함한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문서 또는 레터헤드가 포함된 편지.

e. 현 재산세 납부 고지서.

f.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된 주거용 상수도 고지서.

g. 최근 60일 이내 발급된 집주소가 적힌 렌트 영수증.

h.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 시,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IDNYC 카드 포함)으로서 집주소가 적혀있는 것.

i. 전년도 소득세 보고 양식.

j.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식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임시 운전 허가증.

k. 지난 60일 이내 발급된 세금 원천징수나 집 주소가 적혀있는 급여 수령 확인증과 같이 고용주가 발급한 공식 급여 명세서; 고용처의 레터헤드를 사용한 편지는 거주지 증명으로 접수되지 않음. 반드시 집주소가 적혀 있고 발급된지 60일 이내의 것이라야 함.

l. 유권자 등록 서류(학부모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것).

m. 거주지로 결정되는 각종 멤버십(예, 주민 협회 등)으로서 학부모의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n. 발급한지 60일 이내의 법적 양육권 지정 명령 또는 후견인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녀 양육권 증빙서류로서 아동의 성명과 집주소가 적혀 있는 것.

상기 어떤 문서도 한 가지 만으로는 거주지 증빙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3자 공술서(첨부 8 참고)가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증빙서류 두 가지가 필요하며, 제 3자 공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증빙서류 세 가지(아래 제 2 문단에 설명한 바와 같이)가 필요합니다. 전화 고지서, 크레딧카드 고지서, 의료보험 카드 등은 거주지 증빙 서류로 접수될 수 없습니다.

2. 학부모가 아파트나 주택을 재임대(서블렛)하고 있거나 한 가정 이상이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 명 만이 임차인 또는 주택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부모 본인과 원 임차인이 서명하고 공증받은 "거주 공술서"(해당 가정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와 집주소를 확인하는 두 가지 서류를 통해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공술서에 한 서명은 공증받는 것이 좋으나 공증받은 서명이 없을 경우, 원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가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이러한 공술서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이러한 유형의 주소 공술서를 얻기 힘든 경우, 이 학부모가 특정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제 3자가 작성한 공술서("제 3자 공술서" 첨부 8 참고)를 상기 VII.A.1섹션에 명시된 두 가지 다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학부모가 한 곳 이상의 뉴욕시 주거지를 갖고 있다면, 학교 등록을 목적으로 한 주거지는 해당 학생이 생활하는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4. 만약 주소지 증빙에 대한 타당함에 의문점이 있거나 학부모가 적절한 주소지 증빙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이나 학교 중 적절한 곳에서 학생을 임시로 등록시킬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소지 조사의 결과에 따른 유보조치로 학생이 임시로 학교에 등록되었음을 안내하는 임시 등록 통지문 (Provisional Admission Notice)을 학부모에게 보낼 것입니다 (첨부 번호 4 참조). 학생이 등록한 학교에서 아래 "주소지 위조 및 조사"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 주소 증명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사가 유보된 동안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학생은 수업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5. 홈리스 학생의 경우 원 임차인/세입자가 거주 공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B. 허위 주소지 조사

학생의 주소지에 관한 의문점이 있거나 학생의 등록을 위해 주소지를 위조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발견한 지 30일 이내에 주소지 증빙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없는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보로 현장 지원 센터 담당자에게 조사결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로 현장 지원 센터 담당자는 이 결과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로 현장 지원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학을 추천할 것입니다. 보로 현장 지원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조사와 관련된 문서를 검토하고 이것이 전학을 명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로 현장 지원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그 후 학생 전학을 승인할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는 그 후 전학할 학교와 전학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결정하고 해당 학생을 전학 학교 장부에 등록할 것입니다.

1. 만약 학생이 전학하게 된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지문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a. 조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 및

   b. 재학중인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으며 적절한 학교로 전학조치; 및

   c.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가 결정한 바에 따른 전학할 학교의 이름, 번호 및 주소 및 전학이 효력을 갖게 될 날짜; 및

   d. 통지문을 받은 지 5일 이내에 학교의 의혹을 뒷받침한 보로 현장 지원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 보로 현장 지원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이 학교장 및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와 논의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한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학생의 전학이 유보될 것입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은 학교 수업일 기준 10일 내 이루어 질 것입니다.

3. 적절한 전학할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는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가 학생이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의 결정에 따라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적절한 학교로 전학하거나 뉴욕시 주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면 학부모는 교육감 규정 A-125에 따라 학비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VIII. 특수 상황

A. 미아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친권을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격리된 "미아"로 의심된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학생에게 입학을 허가하고 즉시 인근 경찰서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B. 독립한 미성년 (16-17 세)

1. 본인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며 양자 양육이 필요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 만이 독립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학생이 독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학생은 학교 등록을 위해 학부모를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이 독립한 것으로 간주할 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모가 양육 권리를 포기하였습니까?
   - 해당 학생이 학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거나 가정의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까?
   - 학생 본인의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해당 학생이 마지막으로 부모와 접촉한 것이 언제입니까?

   학생에게 독립 입증서 (첨부 번호 5 참조)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거주지 증빙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은 렌트 영수증, 거주지에 세간을 들여준 사람으로부터의 진술서 또는 미성년 학생의 입증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18세 이하며 결혼하였으며 학생이 독립한 경우.

C. 양쪽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

1. 학생은 법적으로 하나의 주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따로 사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거주지는 양육자로서 관리를 제공하는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공동 양육권을 갖게된 부모의 경우 학생의 주거지는 우선적인 물리적 양육권을 갖게된 부모의 거주지로 정합니다.

D. 홈리스, 보호자 없는 청소년 및 [11] 가출 청소년

1. 정의:

   a. 고정적, 정기적,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학생을 홈리스 학생이라고 칭함.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이 해당됩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이 집을 잃었거나 유사한 이유(더부살이-doubled up)로 친구, 친척 또는 기타 인물과 거주 또는 적절한 대안 없이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나 캠핑장에서 거주하는 아동; 또는
      -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공적 또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쉼터에서 거주(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호텔, 종교관련 쉼터 및 정신적인 문제로 전환 거주지에서

[11] 단신/가출 청소년에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포함됩니다.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 또는

- 수양 가정으로의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 또는
- 일반적으로 정규 숙박 시설로써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설 장소에서 거주하는 아동; 또는
-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빌딩, 표준 이하의 주거지, 버스 또는 기차 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아동.

b. 보호자 없는 청소년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물리적인 후견권이 없는, 상기 설명된 홈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2. 홈리스, 보호자가 없는, 또는 가출 아동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적용되는 경우 입학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거주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새로운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홈리스 고등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 전에 통학에 따르는 어려움을 증명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12] 학생이 새로운 거주지에 따라 새로운 학교에 다니고자 선택하였을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일반적으로 등록에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즉시 홈리스 아동 또는 보호자 없는 학생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홈리스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780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첨부 6 및 7도 참고하십시오.

3.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거주 프로그램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노숙 학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거주지 주소는 학부모가 제공한 우체국 주소를 이용하거나 2자리 학군 번호 뒤에 "DV" 및 카운티, 보로, 주 및 우편번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학군은 Box 01DV, New York, New York 10002이라 기록합니다.

4. 영구 주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들 학생은 멕킨리-벤토 홈리스 지원법 타이틀 VII (42 USC 11431) 및 교육감 규정서 A-780에 따라 즉각적으로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보호자 없는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보호하에 있지 않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보호자 없는 학생은 등록이나 전학에 성인과 함께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담당 직원 또는 학교 교직원은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학생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 복지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에 알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노숙 학생은 거주지 증빙을 포함한 서류 미비로 인해 즉각적인 학교 등록이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7. 새로운 학교 입학 학년 (pre-k, 유치원, 6학년 및 9학년)에 해당하는 입학전형 절차를 밟고 있는 홈리스 학생들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영구 거주지가 있는 일반학생들과 동등학 입학우선권이 있습니다.

E. 수양 보호(Foster care) 학생

수양 보호를 받고 있으며 수양 가정이 변경된 학생들은 처음 학교에서 계속 학습할 수 있으며 또는 새로운 주소에 따라 지리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2] 통학의 어려움에 따른 전학은 고등학교 레벨에만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변경된 수양 보호를 받고있는 고등학생으로 새로운 수양 가정으로부터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학생은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수양 가정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F. 가정 및 병원에서의 교육으로부터 재입학하려는 학생

가정 및 병원에서의 교육으로부터 재입학하려는 학생은 가족과 협의하여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한 해당 학생이 이전에 다녔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G. 기관의 보호에서 재입학하려는 학생

주, 시, 또는 사설 기관으로부터의 보호에서 벗어나 공립학교로 재입학하려는 학생들은 빠르고 적절한 교육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는 그룹 홈, 정신 병동, 발달장애 센터, 보호 감호 시설 및 뉴욕주 아동 및 가정 서비스 담당실 (OCFS) 및 아동 복지국(ACS)에서 후원하는 기숙 치료 센터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보호감호 기관으로부터의 석방 통지문을 제출할 것이 <u>요구되지 않습니다.</u>

1. 해당 기관에서 학교로 돌아갈 것을 추천하도록 결정하는 즉시, 기관에서는 IEP를 포함한 관련 학교 기록과 함께 학생의 상태 변경을 설명한 통지문을 적절한 학생 등록 담당실의 패밀리 웰컴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2. 뉴욕시 공립학교로 재입학하려는 기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뉴욕시 또는 그 밖의 보호감호 시설로부터 뉴욕시 학교에 재등록하려는 학생들은 본 문서에 기재된 등록 정책에 부합하여 익년도 내에 전에 다녔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와 논의하여 전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보호감호 기관으로부터의 석방 통지문을 제출할 것이 <u>요구되지 않습니다.</u>

H. 정학 후 복학하는 학생

1. 정학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하거나 교육감 규정 A-450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전학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교육을 받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았던 8학년 학생들 중 다음 가을 학기에 9학년 배정을 받았던 학생들은 8학년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배정 받았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학생의 "정학" 기록에 따라 학생의 전학이나 등록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IX. <u>목록 공지/전학 절차</u>

A. 학년도 말의 학생 전학

1. 6월에 "보내는" 학교들은 "받는" 학교들에 진급의 결과를 9월에 입학하게 되는 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목록 공지 (List Notice)로 알려야 합니다.
2. "보내는" 학교의 교장은 반드시 목록 공지에 서명을 하고 입학허가 및 예방접종 정보가 갖추어 졌으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현장 감독이나 담당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점검 목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3. 모든 "받는" 학교들은 담당자를 정해 전학을 오는 학생들의 기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미비된 자료가 있다면, "받는" 학교에서 즉시 "보내는"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4. 누적된 기록, 특수 클리닉 패키지 및 기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기록들은 학교장이 지명한 입학허가 담당직원이 검토하고 취합하여 일반적으로 6월의 첫 2주간으로 정해지는 기록 전달의 날 (Transfer of Records Day)에 "받는" 학교로 전달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들은 반드시 학년도가 끝날때까지 절차를 마루리 하여야 합니다.

B. 리스트 노티스 절차를 이용하는 이유

학생들은 6월에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 리스트 노티스를 통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됩니다:

1. 상급 학교로의 진학 (공립이나 사립) 예.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중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2. 학교의 폐교, 개교 또는 구조조정;
3. 학교들은 기타 다른 이유로는 학년도의 어떤 기간에도 학생들의 리스트 노티스를 하지 않습니다.

C. 커뮤니티 학교 학군 학교들은 75학군 (뉴욕시 프로그램 학교)들로 학생들을 리스트 노티스 하지 않을 것입니다.

D. 75학군에서는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특수교육 위원회 (CSE) 재평가가 끝나고 IEP에 학군 내 공립학교가 추천된 경우에만 고등학생을 비75학군 일반 고등학교로 리스트 노티스 할 수 있습니다.

E. 리스트 노티스가 준비되는 동안 교육청 가정 교육 또는 병원 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일반 교육 학생들은 정규 학교 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된 리스트 노티스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F. 어떤 학생도 5개 보로 외에 학교로 리스트 노티스를 할 수 없습니다.

X. 예외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학교 시스템의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XI. 문의

전화: 718-935-2009	등록, 입학전형 및 전학 요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학생등록 담당실 (The Office of Student Enrollment)	팩스: 212-374-5568
전화: 212-374-6095	출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 Mandated Responsibilities	팩스: 212-374-5751
전화: 212-802-1500 전화: 917-521-3639	*75*학군 입학 및 전학에 대한 문의는 *75*학군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79*학군 입학 및 전학에 대한 문의는 *79*학군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팩스: 212-802-1678 팩스: 917-521-3649